



전자금융 이체한도 추가 약정서

제 1 조 목적

본 약정서는 이용자가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이체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 카카오회 주식회(이하 “카카오뱅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에 전자자금이체한도에 관해 추가 약정을 함으로써 이체한도를 일시적으로 증액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한도증액 신청

- ① 이용자는 <별표 1>의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보안등급에 따라 영상통화를 포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고, 카카오뱅크가 배포하는 카카오뱅크 스마트폰 모바일앱(이하 “모바일앱”이라 합니다)에서 이 약정서에 동의를 한 후 한도증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제 1 항에 따라 이체한도 증액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1. 증액할 이체한도의 종류(1 회 이체한도, 1 일 이체한도)
 2. 증액 후 이체한도 금액
 3. 한도증액 신청일로부터 7 일 이내의 기간 중 최장 2 일의 범위에서 증액된 이체한도가 적용될 기간(이하 “한도증액기간”이라 합니다)
- ③ 이 약정서에 따라 이용자가 증액할 수 있는 최대 이체한도는 <별표 2> 증액 가능한 최대 이체한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④ 제 2 항의 한도증액기간이 경과하면 이체한도는 한도증액 전의 이체한도로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제 3 조 한도증액 신청의 철회 및 제한

- ① 이용자가 이 약정서에 따라 한도증액 신청을 했더라도, 이용자는 한도증액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모바일앱에서 직접 한도증액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이 약정서에 따라 한도증액 신청을 했더라도, 카카오뱅크는 보안상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 이용자의 한도증액에 의한 이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한도증액 후 이체

이용자가 한도증액기간 중에 이 약정서에 따라 증액된 한도 내에서 이체거래를 하는 경우, 이용자는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별표 1> 거래인증수단별 보안등급에서 정하는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카카오뱅크는 이용자에게 추가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비밀번호 노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종 접근매체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 6 조 약정서의 변경

카카오뱅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조항을 준용합니다.

제 7 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그 외 상품약관 및 상품별 특약이 적용됩니다.

부칙

이 약정서는 2017 년 5 월 25 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1 등급	2 등급	3 등급
이용자 (개인)	1 회	1 억원	1,000 만원	1,000 만원
	1 일	5 억원	5,000 만원	1,000 만원

<별표 2> 증액 가능한 최대 이체한도

		증액 가능한 최대 이체한도		
		1 등급	2 등급	3 등급
이용자 (개인)	1 회	5 억원	1 억원	1 억원
	1 일	20 억원	5 억원	1 억원